

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29.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심 사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 안 이 유

- 건축법에서 삭제된 행정규제 조항을 폐지코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**온돌시공 조항삭제**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상위법령인 **건축법 제56조 온돌의 구조등에 관한 법률이 '99.2.8일 삭제됨에 따라**
- 그간 위임받아 설치되 평창군 건축조례 제46조 "**온돌의 시공조항**"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